



최근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현황 및 주요 내용

백영화 연구위원

요 약

2022년 상반기에 총 5건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음. 개정안은 보험회사의 파생상품 거래 한도 규제 폐지, 보험협회의 비교·공시 제도 개선, 심평원을 통한 실손의료보험금 보험금 청구 절차 도입, 보험계약 해지 시 설명의무 도입, 보험회사와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유형 추가를 내용으로 하고 있음

○ 2022년에 들어와서 총 5건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음

- 해당 개정안의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5건 모두 현재 정무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음

〈표 1〉 2022년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현황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주요 내용
2116750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0인)	2022. 8. 2	•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유형 추가
2115968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0인)	2022. 6. 15	• 보험계약 해지 시 설명의무 도입
2115534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진교의원 등 10인)	2022. 5. 9	• 심평원을 통한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절차 도입
211546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4인)	2022. 5. 2	• 보험협회의 비교·공시 제도 개선
2115296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2022. 4. 15	• 파생상품 거래 한도 규제 폐지

○ (이용우의원안)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방법 및 비율 규제와 관련하여, 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위탁증거금 합계액에 관한 한도 규제를 폐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보험업법 제106조는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방법 및 비율에 대해 규제하고 있음
- 현행 보험업법상 파생상품거래¹⁾를 위한 위탁증거금(장외파생상품거래의 경우에는 약정금액)의 합계액은 총자산의 6%(장외파생상품거래의 경우 3%)를 초과할 수 없는데(보험업법 제106조 제1항 제10호), 개정안은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파생상품 거래에 관한 한도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임
 - 파생상품 거래에 관한 직접적인 한도 규제는 보험회사의 위험회피를 위한 파생상품 거래의 적극적 활용 및 효과

1)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9에 따른 위험회피수단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적인 자산운용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점, 2023년부터 부채시가평가 제도가 도입되어 금리 변화에 따른 부채의 변동성 심화가 예상되므로 이로 인한 위험 관리를 위해 파생상품 거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임

○ (민형배의원안) 보험협회의 비교·공시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비교·공시의 방법과 관련해서도 보험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비교·공시하라는 내용을 추가함

- 보험협회의 비교·공시와 관련하여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협회는 보험료·보험금 등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교·공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보험업법 제124조 제2항)
- 개정안에서는 위 조항에서 “(…) 비교·공시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 보험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비교·공시하여야 한다”라는 표현으로 개정하는 것을 제안함
 - 현재는 상위법인 보험업법에서는 “비교·공시할 수 있다”라고 하여 법 문언상 임의적 비교·공시인 것처럼 규정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 있는 하위 규정에서는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각 호의 구분별로 각 목의 사항을 비교·공시하여야 한다”라고 하여(보험업감독규정 제7-46조 제1항) 실제로는 의무적 비교·공시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법 체계상 균형을 맞추기 위해 상위법인 보험업법 자체에서 의무적 비교·공시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아울러 소비자보호를 위해 보험협회가 비교·공시를 함에 있어 보험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비교·공시하라는 내용을 추가하고자 함

○ (배진교의원안)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간소화와 관련하여, 요양기관은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제출하고 심평원이 해당 서류를 보험회사에 비전자적 형태로 송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임

- 현재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와 관련하여 다수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데²⁾ 해당 법안들의 경우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요양기관이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음³⁾
- 배진교의원안은, 심평원이 요양기관으로부터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서(전자적 형태로 제출받는 것이 가능함) 보험회사에 비전자적 형태로 송부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음
 - 요양기관이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할 경우의 개인정보 유출 및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는 것임
- 또한 배진교의원안에서는 심평원이 요양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류를 보험금 지급에 관한 업무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도 두고 있음
 - 제안 이유에 의하면 해당 조항은 심평원이 보험금 청구 관련 증빙서류를 관리함으로써 비급여 의료비 항목에 대해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임

2) 전재수의원안(의안번호 제2102141호), 고용진의원안(의안번호 제2104447호), 김병욱의원안(의안번호 제2109414호), 정청래의원안(의안번호 제2109937호), 윤창현의원안(의안번호 제2102552호)

3) 다만 서류 전송을 위한 전자시스템의 구축·운영이나 서류 전송 업무를 심평원 등에 위탁하는 내용도 함께 담고 있음

〈표 2〉 배진교의원안에 의한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절차

내용
① 실손의료보험 보험계약자·피보험자는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의 발급 요청 및 제출 등의 업무를 심평원에 위탁 가능
② 실손의료보험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심평원은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 (전자적 형태에 의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③ 요양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심평원에 제출
④ 심평원은 해당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는 보험회사에 제출(이 경우 전자적 형태에 의한 제출 불가능)

○ (이정문의의원안) 소비자가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보험회사 임직원의 설명의무(해지환급금 내역 및 금전적 손실 발생 여부에 관한 사항,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보험료 부담이나 금전적 손실을 경감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사항)를 신설하는 내용임

- 현행 보험업법이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에서는 보험계약 해지 시의 설명의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이정문의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소법 개정안(의안번호 제2115969호)에 따라 보장성 상품의 중도 해지 시 설명의무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보험업법 개정안에서 해당 금소법 조항을 준용하는 내용임
 - 금소법 개정안에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가 보장성 상품의 중도 해지 의사를 표시한 경우 ① 계약 해지 시 발생하는 해지환급금 내역 및 금전적 손실 발생 여부에 관한 사항, ② 납입유예, 보험료 감액 변경 등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보험료 부담 또는 금전적 손실을 경감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사항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제19조 제2항)
 - 보험업법 개정안에서는 위 금소법 조항을 준용하는 내용을 추가하며 이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보험회사 임직원”으로 봄
 - 보험계약의 중도 해지 시 발생할 수 있는 손실,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제도 등에 대해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임

○ (진선미의원안) 보험회사와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행위 유형에 용역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대주주가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내용임

- 현행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에서는 보험회사가 직·간접으로 대주주와 다음의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함: ① 대주주가 다른 회사에 출자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공여, ② 자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일반적인 거래 조건에 비추어 해당 보험회사에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자산에 대하여 매매·교환·신용공여 또는 재보험계약을 하는 행위
- 개정안은 위 행위 외에도 “용역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대주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하는 행위”를 금지 행위 유형에 추가하는 내용임
 - 현행 보험업법상으로는 금지되는 행위 유형이 자산 거래 등으로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체상금 미청구 사례 등을 규제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명시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임